「실버바」약관



제1조 약관의 적용

이 약관은 실버바를 매입/매도하는 고객과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을 대리하여 실버바를 판매/매입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(이하 "은행"이라 약칭합니다)간에 이루어지는 실버바의 매매거래에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실버바 매매의 개요

- ① 은행은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을 대리하여 고객에게 실버바를 판매하거나(이하"판매대행거래"라 약칭합니다) 은행이 고객에게 판매대행한 실버바를 고객으로부터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을 대리하여 매입하는 업무(이하 "매입대행거래"라 약칭합니다)를 수행합니다.
- ② 실버바 판매대행/매입대행거래에 따른 권리, 의무는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고객에 귀속 됩니다

제 3 조 대상고객

은행은 실명이 확인된 개인고객(미성년자 및 대리인 거래불가)에 한하여 실버바 판매대행거래와 매입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 단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.

제 4 조 거래장소

고객은 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실버바 매매거래를 합니다.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

제 5조 실버바 종류

- ① 이 약관상의 실버바란 은을 바 (Bar)형태로 주조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물형태의 은으로서, ㈜한국금거래소쓰리엠에서 제조하고. 순도 99.99% 및 질량을 보장하는 실버바를 말합니다.
- ② 실버바 판매단위는 1kg 입니다. 단, 판매단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③ 은행은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이 보유한 재고보유량에 한하여 대고객 판매대행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
- ④ 은행이 이 약관에 따라 판매대행한 실버바에 한하여 고객으로부터 매입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

제 6조 실버바 가격

- ① 기준가격의 결정
 - 1. 기준가격은 국제은가격 및 환율을 이용하여 은 1gram 당 원화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이 거래시점에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.



※ 기준가격

- ☞ 기준가격 [원/a]
 - = 국제 은가격 [\$/T.oz] ÷ 31.1034768[g/T.oz] x 환율 [원/\$]
- 2. 제 1 호에서 거래시점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도(매입)신청서의 내용을 은행 전산단말기에 입력 및 실행 완료하여 실버바의 판매(매입)가격이 산출되는 시점을 말합니다.
- 3. 제 1 호에서 "국제은가격"이란 거래시점에 은행이 고시하는 1 트로이온스 당 미달러화 표시 가격을 말합니다.
- 4. 제 1 호에서 "환율"이란 은행이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실시간 거래되는 환율수준을 반영하여 산정·고시하는 시장연동 환율입니다.
- ② 판매(매입) 가격결정 방법
 - 1. 은행과 고객사이에 이루어지는 실버바 판매(매입)가격은 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.

실버바 판매가격(원) = 기준가격 x 실버바중량 x (1 + 판매 마진율) 실버바 매입가격(원) = 기준가격 x 실버바중량 x (1 - 매입 마진율)

2. 제 1 호에서 규정된 "판매(매입)마진율"은 실버바 종류 및 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

구 분	1kg
판매 마진율	19%
(고객이사실때)	1976
매입 마진율	7%
(고객이파실때)	

- 3. 판매(매입)가격은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③ 판매가격에 추가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.

제 7 조 부가가치세 징수

- ① 고객이 실버바를 매입할 때에는 제 6 조에 따라 결정된 판매가격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② 부가가치세 산식
 - ☞ 부가가치세
 - = 판매가격(고객의 매입가격) x 10 %



제 8조 매매대금지급방법

- ①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실버바를 매입하는 경우, 고객은 제 6 조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제 7 조에 따라 정해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시점에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②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실버바를 매도하는 경우, 은행은 매매계약체결시점에 제6조에 따라 정해 진 매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실버바를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. 단,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한 매입거절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제 9조 실물의 인도 및 인수

- ①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실버바를 매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교부합니다.
- ②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실버바를 매도하는 경우, 고객은 매도신청서와 함께 실버바를 은행에 인도하여야 합니다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실버바의 인도장소는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의 영업점으로 합니다. 단 제 4 조에 의하여 매매거래 장소가 변경될 때에는 이에 따릅니다.

제 10조 유의사항

- ① 실버바 판매(매입)가격은 국제은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 6조 제1항에 따라 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은 국제은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시간 변동되므로, 고객이 상담시 조회한 가격과 실제 판매(매입)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③ 은행이 고객에게 판매대행한 실버바를 고객으로부터 매입대행하는 경우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은행이 판매대행한 실버바임이 확인되고, 실버바의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이를 매입대행 할 수 있습니다.
- ④ 은행은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실버바, 실버바의 외형이 손상되거나 위·변조가 의심되는 실버바에 대하여는 매입대행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⑤ 실버바 매매거래는 실명으로 합니다.
- ⑥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이 해산, 폐업, 영업정지, 관련법령의 개폐 등으로 실버바 판매/매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, 은행과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은행은 실버바 판매대행/매입대행 업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
- ① 제6항에서 정한 거래종료사유중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은행이 실버바 판매대행/매입대행 업무를 종료하는 때는 업무종료일 1개월 전부터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,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매매대행업무 종료에 대한 내용을 알립니다. 또한 다음 각호의 방법 중1개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 - 1.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 - 2.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



- 3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
- ⑧ 제 6항에서 정한 거래종료 사유 중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의 해산, 폐업, 영업정지, 관련 법령의 개폐 등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실버바 판매대행/매입대행 업무를 종료하 는 때에는 은행이 종료사유를 인지하는 즉시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고객에게 해당사실을 공지합니다.

제 11 조 약관의 변경

-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립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.
-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신고한 전자 우편(E-mail),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 또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게시합니다.
 - 1. 제1항에 의한 게시
 - 2.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
 - 3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
-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 12 조 예금자 보호

실버바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제 13 조 면책사항

- ① 은행은 은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② 은행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 실버바 판매대행/매입 대행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,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고객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
- ③ 은행은 제 10 조 제 3 항, 제 4 항 또는 제 6 항의 사유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실버바를 매입대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④ 고객이 실버바를 수령하기 전에 발생된 실버바의 물품상 하자에 대하여는 실버바의 보관, 관리 등에 은행의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



제 14조 변경내용 고지

- ① 고객이 최초 거래시 은행에 제출한 전화번호, 주소, 전자우편(e-mail)이 변경되는 경우,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, 고객이 이러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은행의 통지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② 고객이 제 1 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관변경 내용이 1 항의 사유로 제 11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약관변경내용이 고객에게 개별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, 고객과 은행사이의 거래에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.

제 15 조 분쟁조정

- ① 고객은 실버바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-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 16 조 기 타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사용중인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